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 (김희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693

발의연월일: 2024. 9. 5.

발 의 자:김희정·박준태·서일준

이성권 • 이종배 • 최수진

권성동 • 백종헌 • 김상욱

임종득 · 김종양 · 강선영

곽규택 의원(13인)

제안이유

2023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함. 이에 대응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기본계획의 목표가 5년마다 재설정됨에 따라 안정적 재원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따르면 지역문화 활성화, 프로스포츠 단체 지원 사업의 예산이 저출생대응 예산에 포함되는 등 저출생 대응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예산 집행이 있었음.

이에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저출생 대응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출 대상 사업을 일·가정양립균형, 돌봄 및 모자보건에 한정하여 그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관리 · 운용하도록 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특별회계의 계정을 일·가정양립계정, 돌봄계정, 모자보건계정으로 분리함(안 제3조).
- 다. 일·가정양립계정의 세입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다른 특별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차입금 등으로 하고, 세출은 일·가정 양립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함(안 제4조).
- 라. 돌봄계정의 세입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차입금 등으로 하고, 세출은 돌봄 여건을 개선하여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함(안 제5조).
- 마. 모자보건계정의 세입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차입금 등으로 하고, 세출은 건강한 임신·출산 및 출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함(안 제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36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출생 대응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의 운용·관리) ①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 ② 회계의 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 ③ 세출예산의 배정·자금운영·결산, 그 밖에 회계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조(계정의 구분) 회계는 일·가정양립계정, 돌봄계정 및 모자보건 계정으로 구분한다.
- 제4조(일·가정양립계정의 세입·세출) ① 일·가정양립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7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2.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 3. 회계의 돌봄계정 및 모자보건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 4. 제8조에 따른 차입금
 - 5. 제10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 6.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 7.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 ② 일 · 가정양립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일·가정 양립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
 - 가. 육아휴직 사용 문화의 정착에 필요한 사업
 - 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 근무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 다. 그 밖에 예산에서 정하는 사업
- 2. 일 · 가정양립계정의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 3. 계정의 관리 · 운영에 필요한 경비
- 4. 회계의 돌봄계정 및 모자보건계정으로의 전출금 제5조(돌봄계정의 세입·세출) ① 돌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7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2.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 3. 회계의 일·가정양립계정 및 모자보건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 4. 제8조에 따른 차입금
 - 5. 제10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 6.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 7.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 ② 돌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돌봄 여건을 개선하여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
 - 가. 자녀의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
 - 나.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 집과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의 설치·운영 지원 사업
 - 다. 다양한 돌봄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사업 라. 그 밖에 예산에서 정하는 사업
- 2. 돌봄계정의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 3. 계정의 관리 · 운영에 필요한 경비
- 4. 회계의 일·가정양립계정 및 모자보건계정으로의 전출금 제6조(모자보건계정의 세입·세출) ① 모자보건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제7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2.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 3. 회계의 일 · 가정양립계정 및 돌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 4. 제8조에 따른 차입금
 - 5. 제10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 6.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 7.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 ② 모자보건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건강한 임신·출산 및 출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
 - 가. 임신·출산 및 출생 아동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
 - 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에 대한 지원을 통한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한 사업
 - 다.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의 극복을 지원하는 사업
 - 라. 그 밖에 예산에서 정하는 사업
- 2. 모자보건계정의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 3. 계정의 관리 · 운영에 필요한 경비
- 4. 회계의 일·가정양립계정 및 돌봄계정으로의 전출금
- 제7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회계는 세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있다.
- 제8조(차입금) ① 회계는 세출 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장기 차입을 할 수 있다.
 - ② 회계는 지출할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제9조(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10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 제11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